# 업무상배임·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
[울산지법 2013. 2. 22. 2012고단358]

### 【판시사항】

- [1]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역장치에 처 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 들이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,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한 사례
- [2]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,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, 그 밖의 자료들은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한 사례

## 【판결요지】

- [1]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개인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甲 회사가 과거에 입찰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나 단순한 PPT 자료이거나 경영자료,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으로서,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,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.
- [2]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,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반면, 과거 견적서, 영업이나 경영 관련 서식, 일반적인 설계도면 등 자료나 영상들은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고, 나머지 자료들도 乙 회사의 단순한 기업로고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.

### 【참조조문】

- [1] 형법 제355조 제2항, 제356조, 형사소송법 제325조
- [2] 형법 제30조, 제33조, 제355조 제2항, 제356조

#### [전문]

```
【피 고 인】
【검 사】김정훈 외 1인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영준
【주문】
  1
   1. 피고인 1
 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 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. 9. 15.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
  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를 몰수한다.
   압수된 증 제8, 9호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환부한다.
   2. 피고인 2
 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 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압수된 증 제11, 12, 14호를 몰수한다.
   3. 피고인 3
 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 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 압수된 증 제20, 21호를 몰수한다.
[이유]
  1
[이유]
  1
[이유]
  ]
[이유]
  1
[이유]
  1
[이유]
```

1